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설명의무위반죄의 과태료 전환〉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131호)

2025.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현행법상 설명의무위반죄 및 법원의 면책 불허가 관련 규정	3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5
4. 관계기관 의견	9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2. 13.
- (3) 회 부 일 : 2025. 2.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벌칙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이 법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려는 내용임(제658조 삭제 및 안 제66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8조(설명 의무 위반죄)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제>
제660조(과태료) ① ~ ④ (생략) <신설>	제660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현행법상 설명의무위반죄 및 법원의 면책 불허가 관련 규정

가. 설명의무위반죄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약칭함)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¹⁾에서는 i) 채무자 및 그 대리인, ii) 채무자의 이사, iii)채무자의 지배인, iv)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²⁾에서는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i)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ii)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iii) 수탁자의 지배인, iv)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³⁾]는 파산관재인·감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채무자 등의 설명의무) ① 다음 각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및 그 대리인
2.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4.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졌던 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7(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설명의무)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종전에 제578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졌던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8조의6(파산선고를 받은 신탁의 수탁자 등의 구인)

①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한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
2.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3. 수탁자의 지배인
4.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② 파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각 호의 자를 구인하도록 명할 수 있다.

위원 또는 채권자집회의 요청에 의하여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파산선고 전 파산재단 재산의 관리·처분을 하는 등 파산과 관련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채무자·수탁자 등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하여 파산절차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이란 파산재단, 파산채권, 별제권⁴⁾, 환취권⁵⁾, 재단채권과 부인권⁶⁾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의미함⁷⁾.

그리고 현행법은 이러한 설명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설명의무위반죄를 규정하고 있음(제658조).

나. 법원의 면책 불허가 관련 규정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는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556조제1항⁸⁾),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인에 관하여는 제3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4)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5) 제3자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6)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권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7) 전대규, 채무자회생법(제2권), 법문사, 2024, 1191면.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① 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원의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제564조제1항9)).

위와 같은 면책 불허가 규정을 둔 취지는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파산 절차상의 의무이행 태만 또는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면책을 제한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변제절차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제321조 및 제578조의7에 따라 설명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때에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봄.

첫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일종의 금전벌로서,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는 차이가 있고¹⁰⁾, 어떠한 행정법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의 유형과 그 정도를 결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¹¹⁾, 제도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거나 제도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형벌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¹²⁾.

참고로, 2024. 12. 20.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인불응죄 조항을 삭제하고,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바,

10)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3, 599면.

11)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형종과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2)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4. 602면.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 유형에 속하더라도 다음 사항은 형사벌로 처벌하도록 한다.

- ① 단순한 행정질서 위반이라도 이와 관련성이 깊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 ② 행정질서 위반이 결과적으로 위생과 안전의 확보를 크게 저해하는 사항
- ③ 정부 역점 정책에 관련되는 사항
- ④ 제도의 목적 자체를 침해하는 사항(신고영업의 경우 영업신고 등)
- ⑤ 그 밖에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형벌로 처벌해야 할 사항 등

구인불응죄의 과태료 전환에 더하여 설명의무위반죄의 과태료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파산절차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행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4. 12. 20. 채무자회생법 구인불응 관련 개정내용 >

구분	구성요건	위반 시 제재	
2024. 12. 20. 개정 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	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4. 12. 20. 개정 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둘째, 법제적 측면에서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1항제1호는 법원의 면책 불허가 사유의 하나로 제658조의 죄(설명 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제658조 규정을 삭제하고 제660조제5항으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바, 설명의무위반죄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이에 맞춰 면책 불허가 규정의 정비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참고로, 2024. 12. 20.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구인불응죄(제653조) 규정을 삭제하고 제660조(과태료)에 제4항을 신설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인불응죄 조항 삭제에 따라 제564조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서 해당 조문을 인용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자구수정이 있었음.

< 2024. 12. 20. 채무자회생법 개정 사항 >

2024. 12. 20. 개정 전	2024. 12. 20. 개정 후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 5. (생략) <u><신설></u> 6. (생략) ② ~ ④ (생략)	제564조(면책허가) ①----- ----- -----. 1. ----- 제650조·제651조·제656조 ----- ----- ----- 2. ~ 5. (현행과 같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60조(과태료)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6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인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1항제1호에서 제658조를 인용하는 부분도 함께 개정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보완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개정안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실효성을 고려할 때 과소할 우려가 있어 금액 상향 검토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허위설명행위에 대해서는 사기과산죄 등 다른 범죄행위 유형 편입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회생절차의 ‘보고와 검사거절의 죄’와의 관계 및 면책 불허가 사유 규정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1